

세계발전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고,

본 협회
전무이사 김 남 용)

세계발전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들이 신문에 보도 되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 낙농업에 관계되는 것이 있었다. 즉 현재 소득세법에 5년이상 경영한 20두이상의 목장을 이전시는 일정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세되었는데 앞으로는 과세방향으로 검토하고, 분유, 연유, 쇠고기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는데 앞으로는 부과할 것이라고 하고, 현재 아이스크림(유지방 6% 이상)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면제케 한다는 내용이다.

첫째 목장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다는 점이다. 현행이 20두이상 소를 사육하고 있는 목장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많은 목장이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목장을 시작하였을시는 도시 변두리로 한적한 곳이었으나 해가 거듭하면서 도시화되어 장소도 협소하고 또 공해문제도 있어, 공해문제도 없으면서 장소가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하고자 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목장 이전에 제동을 거는 결과가 되는 동시 목장을 처분하여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목장을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취지하에서 공장 이전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면서 목장 이전에는 면제되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과거에도 20두 이상에 한하여 면제케 한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도시주변의 목장을 산간으로 이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소 두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현 목장의 면적과 두수, 그리고 이전하는 곳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목장을 확장하여 이전이 가능토록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연유와 분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즉 연유와 분유는 값이 비싼 것, 그러므로 소비를 억제하는 의미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우유는 우유 그대로를 처리하여 판매하는 것이 비용도 들지 않으며 수익도 많다. 우유에 들어 있는 물기를 없애면 없애는 것만만큼 가공비가 가산되어 값이 올라가게 된다. 우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에도 분유를 사용치 않고 우유를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유 그 자체는 보존성이 없다. 농민들이 생산한 우유는 계절에따라 그 자체가 다 소비되기도하고 또 부족도하고 잉여되기도 한다. 잉여되었을 시는 할 수 없이 가공비를 들여 분유로 만들어 보관을 하게 되고 또 부족시는 그 분유를 다시 이용한다.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서는 보관이 용이한 분유를 값은 비싸지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물 상태의 우유나 분유는 같은 것이다. 또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우유가 잉여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국내에서 거래되는 우유가격과 수출가격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국의 농민 보호를 위하여 남는 우유는 덤평가격으로 수출

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85년도에 국내가격이 kg당 3 천 8 백 7 십 5 원하는 전지분유를 750 원에 수출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우유소비량은 국민 1 인당 연간 23kg에 불과하나 일본이 75kg, 미국 300kg, EC 의 여러나라는 500kg 이상이 되고 있다. 또 선진국의 여러나라는 우유를 더싼 값으로 국민에게 먹이기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쓰고 있다. 이와같은 실정하에서 부가가치세를 분유에 부과하면 분유 즉 우유 사용을 억제하고 결국은 국민체위저하라는 국면에까지 몰고 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외국에서 각종 통로를 통하여 덤픽하여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한 국내 유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켜 우리나라 낙농업의 장래를 암담케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바다. 아이스크림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아이스크림에 우유를 원료로 하지 않고 콩을 원료로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아이스크림(빙과)을 만들게하는 결과를 놓았지만 분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은 물론 우유를 원료로 하는 전 품목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효과가되어 우유를 원료로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리라 본다.

셋째 쇠고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절이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전 국토의 66%에 이르고 있다. 농민들이 부업으로 축산을 한다면 소 사육이다. 양계와 양돈은 이미 부업의 영역을 떠나 전업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나마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우와 젖소를 기르는 일이다. 사료용곡물을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토의 60%의 산지를 이용하여 소를 키우면 많은 소가 수입사료곡물에 의존치 않고 농산부산물과 산야초로 사육되어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농촌에서는 부업으로 소를 많이 길렸다. 그 결과 소는 과잉되어 소 값은 계속 떨어졌으며 정부에서도 소 값 안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소

값은 바람직한 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관광호텔등에서도 당초에는 쇠고기 질을 가지고 국산은 외국산을 따르지 못한다고 수입을 고집하였으나 이제는 질보다 가격을 가지고 수입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때에 국내산 쇠고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결국 쇠고기 값이 인상되는 결과가 되어 소 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켜 우리나라에서의 소 사육을 말살하자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다.

넷째 아이스크림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해제다. 당연한 조치다. 우유소비 확대면보다도 국민체위향상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국민체위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국민 각자도 체위향상을 위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런데 착상의 잘못으로 십년간 국민체위향상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온 것이 아이스크림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였다. 영양분이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부과로 값을 높여 먹지 못하게하고 영양분 없는 빙과는 더욱 싸게하여 많이 먹도록 유도한 세제였었다. 지난 해부터 해제된다고 지상에 오르내린 것인데 아이스크림 성수기인 6 월전에 해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농민들은 계속 이농을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머물러 있으려하지 않는다. 농촌의 총각들은 장가 가기가 힘들다등등은 농촌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라고 본다. 농촌을 다른것에 우선하여 우대하여 달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절망 아닌 조그만 희망을 갖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분유와 쇠고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 같다. 아이스크림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뿐이다.